#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49

발의연월일: 2024. 7. 9.

발 의 자:김남희·김한규·김 윤

전진숙 · 김준혁 · 장종태

권칠승 · 고민정 · 이성윤

민병덕 · 남인순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에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·등사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었어,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·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.

그런데 열람·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비판이 있고,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신변보호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열람·등사권을 폭넓게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).

#### 주요내용

가.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(안 제8조의3 신설)

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,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, 통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.

나. 법원에 대한 소송기록 등의 열람·등사(안 제8조의4 신설)

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「형사소송법」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이나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·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함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54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·등사) ① 특정강력범 죄사건의 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 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·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),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 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·변호사(이하 "피해자등"이라 한다)는 검 사에게 「형사소송법」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 건(이하 이 조에서 "서류등"이라 한다)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 가하여야 한다. 다만, 「형사소송법」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 호까지의 사유(이 경우 "소송기록"은 "서류등"으로 본다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서류등의

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- ④ 검사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⑦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「형사소송법」 제409조 및 제413 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8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등 열람·등사) ① 법원은 피해자등이 「형사소송법」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「형사소송법」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피해자등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 및 「형사소송법」 제294 조의4제2항·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3(검사가 보관하고 있는
	서류 등의 열람·등사) ① 특
	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(피해
	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
	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
	배우자·직계친족 및 형제자매
	를 포함한다), 피해자 본인의
	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
	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
	우자 • 직계친족 • 형제자매 • 변
	호사(이하 "피해자등"이라 한
	다)는 검사에게 「형사소송
	법」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
	따른 서류 또는 물건(이하 이
	조에서 "서류등"이라 한다)의
	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
	<u>있다.</u>
	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
	하여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
	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
	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
	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.
	다만, 「형사소송법」 제59조의

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(이 경우 "소송기록"은 "서 류등"으로 본다)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 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③ 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④ 검사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 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 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 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 는 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 용하는 경우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 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<u>⑥</u>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

<신 설>

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검 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①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는 「형사소송법」 제409조 및 제413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.

제8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등 열람・등사) ① 법원은 피 해자등이 「형사소송법」 제29 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 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 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 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 하여야 한다. 다만. 「형사소송 법」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피해자등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.

이 경우 제1항 및 「형사소송법」 제294조의4제2항・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